

검사공무원증표

1. 소속:
2. 직위:
3. 성명:
4. 유효기간:

년 월 일
~ 년 월 일

3.5×4.5cm
(3개월 이내의
촬영사진)

위 사람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영업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


시장·군수·구청장

80mm×100mm[백상지(150g/㎡)]